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정부는 2025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8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정을 추진하는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부가가치세법,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개별소비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세무사법, 관세사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별첨]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담당 부서	세제실 조세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진규 (044-215-4110)
		담당자	사무관	이원준 (wonjun220@korea.kr)

I. 주요 개정내용

1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조특칙)

* 투자세액공제율(%) : (일반) 1~10 (신성장원천기술) 3~12 (국가전략기술) 15~30

○ (현행) 반도체, 이차전지 등 8개 분야* 61개 사업화시설

* ①반도체, ②이차전지, ③백신, ④디스플레이, ⑤수소, ⑥미래형 운송이동, ⑦바이오의약품, ⑧인공지능

○ (개정안)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등 미래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분야 등 64개 사업화시설로 확대

분야	사업화시설 (신규: 3개, 확대: 2개)
반도체	(신설)차세대 MCM(Multi-Chip Module) 관련 신소재·부품 제조 설비
	(확대)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사업화시설 → 패키징까지 확대 (※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차세대전력 반도체)
미래형 운송·이동	(신설)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운송·추진 기술 관련 설계·제조 시설 (※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LNG 화물창)
	(신설)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디지털 설계·생산운영 기술 관련 제작·실증 시설
바이오 의약품	(확대)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 시설 → Buffer(완충액) 소재 관련 시설 추가

○ (적용시기) '26.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조특칙)

○ (현행) 첨단 소부장, 탄소중립 등 14개 분야* 187개 사업화시설

* ①미래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SW, ④콘텐츠, ⑤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헬스, ⑧에너지·환경, ⑨융복합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⑫첨단 소재·부품·장비, ⑬탄소중립, ⑭방위산업

○ (개정안) 철강 등 주력산업 및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 지원 등을 위해 193개 사업화시설로 확대

분 야	사업화시설 (신규: 6개)
바이오·헬스	동물용의약품 후보물질 개발·제조시설
첨단 소부장	고규소 함량 저철손 전기강판 제조 시설(※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특수탄소강)
	MLCC(Multi-layer Ceramic Capacitors)용 초미세 니켈 나노분말 및 내부전극용 나노 페이스트 제조 시설
탄소중립	고로 용선 및 전기로 용강 합탕 시설
	디지털 영상분석 기반 철스크랩 판정·선별 시설
	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조 시설 및 이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 (적용시기) '26.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3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안전시설 범위 확대(조특칙)

- (현행)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폭넓게 적용**중

* ①산업재해 예방시설, ②화재예방·소방시설, ③광산안전시설, ④내진보강시설, ⑤비상대비시설

** 건물·구축물, 비품, 운송구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미적용이 원칙이나, 안전시설은 허용

- (개정안) 안전시설 유형 중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범위 확대

현 행	개 정 안
○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위한 시설	○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수급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위한 시설 추가
○ 법령상 의무시설 (「산업안전보건법」, 「도시가스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 법령상 의무시설 외 스마트 안전관제시설, 산업재해예방 목적 로봇·드론 등 안전시설 추가

- (적용시기) '26.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Ⅱ. 기타 개정사항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관련 세부사항 마련

*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의 10%(중소기업 15%)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시행령(§22의12) 개정내용 >

◇ 공제대상 웹툰제작자·웹툰콘텐츠·제작비용 등을 규정

- 공제대상 웹툰제작자의 요건, 공제대상 제작비용 등은 시행규칙에 위임

① 공제대상자	웹툰콘텐츠의 실질적인 제작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웹툰콘텐츠 제작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질 것 ② 본인이 주요 제작(시나리오, 콘티, 그림, 편집) 인력이거나 주요 제작 인력과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③ 제작비의 집행·관리와 관련된 모든 의사 결정을 담당할 것
② 공제대상 비용	원작료·각본료·각색료, 기획자·작가·번역자 등의 인건비, 웹툰 제작 프로그램 비용 등
③ 제외되는 비용	기업업무추진비, 광고·홍보비 등

2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시행규칙

☐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 기계 대상 확대

-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업용 지게차를 면세유 공급대상에 추가

3 관세법·관세환급특례법·FTA관세법 시행규칙

☐ 관세 면제 대상 희귀난치성질환 의약품 규정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자가치료* 및 긴급도입** 의약품에 대해 관세 면제

*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센터에 구입을 신청하여 수입을 대행

** 식약처장이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를 위해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 관세 면제 대상 해외개발 핵심광물 요건 규정

-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지분·처분권을 확보한 핵심광물 수입시 관세 면제

* (면제 한도) 지분 물량 + 처분권 물량(지분 물량 2배 이내로 한정) 합계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유효기간 단축 사유 추가

- (현행)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최근 2년간 원산지조사 거부 또는 서류보관의무 위반시 인증 유효기간 단축**

* 수출품목에 대한 원산지증명능력 등 인증을 받은 수출자에 대해 자율적으로 해당 품목의 원산지 증명 허용(7개 FTA) 및 간소한 원산지 증명 절차 적용

**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간 유효 →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축

- (개정안) 인증 유효기간 단축 사유에 '최근 2년간 원산지증명서 부정 발급신청 또는 작성' 추가

□ 한-아세안·한-베트남 FTA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조정

- (현행) HS 2017 기준으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규정

- (개정안) HS 2022 기준으로 현행화하고 FTA 협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조정*

* 예: (한-아세안)역외산 김으로 생산·수출한 조미김은 한국 원산지로 불인정
(한-베트남)역외산 식물성 농축액(인삼 제외)으로 생산·수출한 식료품은 한국 원산지로 인정

□ 불가피한 사유로 외국 미반출된 물품의 국내 반입 시 면세 허용

< 시행령(§213③) 개정내용 >

- ◇ 여객기·여객선의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이 취소되어 미반출된 면세점 구매물품에 대해서는 회수 예외* 인정

* (원칙) 출국 취소 등으로 면세품 외국 미반출시 면세점 운영인이 회수

- 단,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면세 여행자휴대품으로 한정

- 여객기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면세점 구매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면세 여행자휴대품으로 허용

※ 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 적용: \$800 이내(술·담배·향수는 별도 한도)